

예산군도시계획조례안

의안번호	제 66 호
의년 월 일	2003. 5. (제 회)

제출년월일 : 2003. 5. 22.
제출자 : 예산군수

□ 제안이유

도시계획법 및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근거하여 제정 시행중인 예산군도시계획조례를 폐지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도시기본계획수립에 필요한 자문단운영, 공청회개최방법, 주민의견 청취 방법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5조)
- 나.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 도시계획시설의관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운영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15조)
- 다. 개발행위허가 규모, 허가기준, 허가취소,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등에 관한 사항(안 제16조~제20조)
- 라. 용도지역·지구·구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 및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등에 관한 사항(안 제21조~제46조)
- 마.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한 군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분과위원회운영등에 관한 사항(안 제47조~제57조)

□ 참고사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제정근거)

예산군 조례 제 호

예산군도시계획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2장 도시기본계획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군 관할구역안에서 예산군수(이하 “군수”라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4조(도시기본계획 수립 추진기구 등)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별도의 추진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기구는 군 및 관내의 관련 기관 관계자로 구성한다.

③군수는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자문위원은 군수가 위촉하고 단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구성은 부문별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한다.

⑤추진기구 및 자문단의 운영과 관련한 위원의 여비 및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예산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등의 개최방법)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공청회 개최일시 및 장소와 군기본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 공고에 추가하여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및 군홈페이지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②공청회의 토론자는 군의 추진위원장, 연구진, 관계전문가 및 시민단체 또는 직능단체의 대표등으로 지정하며, 군수가 지명하는 자가 주재한다.

③공청회의 개최는 군단위로 1회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④군수는 공청회 개최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한다.

⑤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와는 별도로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또는 시민단체와 간담회등을 통하여 의견을 청취할수 있다.

제3장 도시관리계획

제1절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군수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수 있다.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및 기대효과
2. 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내용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람·공고를 하는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 공고에 추가하여 열람기간동안 주민들이 많이 접할수 있는 공보 및 군홈페이지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②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때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주민의견 청취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수 있다. 이 경우 공청회 개최등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 제8조(재공고 · 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에 의하여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 제7항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다시 공고 · 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 · 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경우(제1종지구단위계획에 한한다)
2. 건축물의 배치 · 형태 · 색채 또는 건축선(벽면선을 포함한다)의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

제2절 도시계획시설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 예산군도시공원 · 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 및 그밖에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 · 사용료 · 관리비용등) 법 제4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과 영 제3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의 관리비용 · 관리방법 · 관리협의회의 구성 ·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①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② 채권의 이율은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제13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 ·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3. 향후 해체 및 이동설치가 용이한 공작물로서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으로 하며, 기타의 공작물은 건축물 또는 대지의 안전을 위한 시설에 한한다.

제3절 지구단위계획

제14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영 제4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호한 환경의 확보 또는 기능 및 미관의 증진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 부지
2.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5조(지구단위계획의 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수 있다.

제4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제16조(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영 제56조 및 영 별표1 제1호에 의한 분야별 검토사항 허가기준에서 세부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18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충청남도 또는 군에서 설립하거나 투자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19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및 조경에 소요되는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안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림법시행규칙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 예치액의 범위안에서 정할 수 있다.

③공사기간이 당해연도를 초과하는 개발행위의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이행보증금을 산정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이행보증금에 공사기간에 따라 소비자물가 인상을 반영하여 산출한다.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를 받은자가 행방불명 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자가 정당한 사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장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제21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등의 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과 같다.
2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4와 같다.

제22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할수 없는 건축물은 별표 25와 같다.
2. 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할수 없는 건축물은 별표 26과 같다.
3. 제1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할수 없는 건축물은 별표 27과 같다.
4. 제2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할수 없는 건축물은 별표 28과 같다.

5. 전통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할수 없는 건축물은 별표 29와 같다.
6. 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할수 없는 건축물은 별표 30과 같다.

제23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당해 용도지역 건폐율이 40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용도지역의 건폐율 이하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제1항에서 정해진 건폐율에 1/4범위내에서 완화 할 수 있다.

제24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1. 제1종자연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2. 제2종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3. 제1종수변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4. 제2종수변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5. 전통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제25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전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3,000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26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 또는 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주거·상업·공업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그외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① 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 건축할수 없는 건축물은 별표 31과 같다.

② 영 제7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31의 제1호 내지 제3호·제5호·제6호·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 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장·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28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심지미관지구 : 5층 이상
2.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 이하(20미터 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
3. 일반지미관지구 : 2층 이상

제29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군수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하여 볼라드·돌의자 등을 설치하는 경우
2. 조경식수를 하는 경우
3.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30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미관지구안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31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 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32조(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별표 32와 같다.
2.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별표 33과 같다.
3. 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별표 34와 같다.
4. 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별표 35와 같다.

제33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36과 같다.

제34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용도 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수 없다.

1. 숙박시설제한지구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
2. 위락시설제한지구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
3.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제한지구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 시설

제35조(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 보호지구안에서 건축할수 없는 건축물은 별표 37과 같다.

제36조(농·수산업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업 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별표 38과 같다.

제37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

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당해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위탁지구
2. 리모델링지구
3. 방재지구
4. 보존지구
5. 문화지구
6. 보행자우선지구
7. 경관지구(도시계획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정할수 있다)

제38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4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4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6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6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6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6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39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취락지구 : 50퍼센트 이하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가. 자연보존지구

- (1)공원시설 : 20퍼센트 이하
- (2)비공원시설 : 20퍼센트 이하

나. 자연환경지구

- (1)공원시설 : 20퍼센트 이하
- (2)비공원시설 : 20퍼센트 이하

다. 자연취락지구

- (1)공원시설 : 20퍼센트 이하
- (2)비공원시설 : 50퍼센트 이하

라. 밀집취락지구

- (1)공원시설 : 20퍼센트 이하
- (2)비공원시설 : 50퍼센트 이하

마. 집단시설지구

- (1)공원시설 : 60퍼센트 이하
- (2)비공원시설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6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40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41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

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같은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제3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42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농지법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은 농업관련시설·공용시설·공공용시설에 한한다.

제43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8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2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35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5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2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25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7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취락지구인 경우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취락지구인 경우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60퍼센트 이하
-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

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용적률은 영 제85조제1항 각호의 범위안에서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4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다만, 자연공원 법에 의한 집단시설지구 및 밀집취락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4.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150퍼센트 이하(도시지역외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제45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4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4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46조(공지의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영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제4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다음의 산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text{용적률} = [(1+0.3\alpha)/(1-\alpha)] \times \text{제43조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 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장 도시계획위원회

제1절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제47조(기능) 법 제113조 제2항 및 영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군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군수가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4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도시·건축관련과(실)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1. 예산군 의회 의원
 2. 예산군 공무원
 3. 토지이용·교통·환경·건축·주택·방재·정보통신·조경·미술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기간으로 한다.

제4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0조(회의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할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대리참석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의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실·과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수 있다.

④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⑤위원장이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심의할수 있다.

제51조(분과위원회) ①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하나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②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2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군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53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4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와 위원회에서 공개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그 범위안에서 공개할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 관계공무원 및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하는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회의결과에 대하여는 회의록이 작성되어 위원장의 인준을 받은후 공보등에 의명으로 요약하여 게재할수 있다.

제55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법령등에 의하여 공개를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수 있다.

제56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예산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5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3.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사항등을 누설한 때
4.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5. 위원의 인사발령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계속할수 없을 때
6. 기타 품위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장 보 칙

제58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법 제1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 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예산군제증명등징수조례에 의한다.

제59조(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세입징 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예산군도시계획조례 및 예산군준농립지역내위락·숙박시설 등설치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관리지역안에서 행위제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이 세분되는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관리지역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구별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예산군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의제1호중 “도시계획법및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0조1항제6호중 “도시계획법 제14조의2규정에 적합할 것”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4조에 적합할 것”으로 한다.

제40조(건폐율) “삭제”한다.

제41조(용적율) “삭제”한다.

제47조제3항중 “도시계획법령에 의한”을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령에 의한”로 한다.

②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제10호 4)중에서

구분란중 “4) 도시계획확인원 단, 도시계획도 또는 지적도 사본”을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한다.

기준란중 “첨부도면 1매”를 “1건”으로 한다.

수수료액란중 “300원 군지역”을 “1,000원 군지역”으로 한다.

비고란에 “타시군의 경우 2,000원”을 삽입한다.

③ 예산군세감면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도시계획법에”를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로 한다.

제16조제1항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같은 법 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결정 및 도시계획에”를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로 한다.

제16조제2항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26조의”를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의”로 한다.

④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준농림지역안에서”를 “관리지역안에서”로 한다.

제13조의2중 “준농림지역에서의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관리지역에서의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로 하고, “준농림지역내에서”를 “관리지역내에서”로 한다.

별표1 주차요금표 5호에서 “예산읍 도시계획수역내”를 “예산읍 도시지역내”로 한다.

⑤ 예산군하수도사용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2호나목(1)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로 한다.

⑥ 예산군도시공원·녹지의접용허가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도시계획구역안의”를 “도시지역안의”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중 “도시계획법 제14조의2의”를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의”로 한다.

제3조 제4항 제3호 중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의”를 “도시계획시설 결정 ·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의”로 한다.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중 “도시계획법 제14조의2의”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의”로 한다.

제4조 제1항 제4호 중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의”를 “도시계획시설 결정 ·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의”로 한다.

제4조 제2항 제2호 다목 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도시계획조례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개발행위허가기준(제17조관련)

1. 분야별 검토사항

검토분야	허 가 기 준
가. 공통분야 (형질변경, 토석채취)	<p>영 별표 1 제1호가목(3)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p> <p>(1) 표고 : 기준지반고(개발행위 신청지역 주진입로가 농어촌도로이상 도로에서 분기하는 곳의 높이)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p> <p>(2) 경사도 : 20도 미만인 토지 단, 경사도가 20도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수 있다.</p> <p>(3) 임상 : 임목의 축적 및 구성에 관하여는 산림법시행규칙 제9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판매 목적으로 재배하는 포자는 제외한다.</p> <p>(4) 인근 도로의 높이, 배수 관계 : 특이한 지형여건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접 도로표면 보다 0.5미터 미만의 높이를 유지하여야 하며, 도로의 배수와 관개 및 유수 소통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p> <p>(5)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I 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II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이어야 한다.</p>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영 별표 1 제2호와 관련)

검토분야	허 가 기 준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p>영 별표 1 제2호가목(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 허용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p> <p>(1)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결하여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오수처리장 및 하수처리장으로 유출되는 하수도를 말한다)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p>

검토분야	허가기준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p>(2) 창고 등 상수도 및 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p> <p>(3) 생산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 생산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 · 어업 · 임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p> <p>(4) 상수도급수구역 또는 하수처리구역외의 지역에서 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수원의 개발과 하수도에 갈음하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임대 및 분양목적의 공동주택을 제외한다)</p>
나. 토지의 형질변경	<p>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및 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p> <p>(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p> <p>(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용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p> <p>(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5) 용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p> <p>(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맷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p>

검토분야	허가기준
다. 토석채취	<p>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허가는 시가화 대상이 아닌 지역으로서 인근에 피해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어야 한다.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3) 공원등에 인접한 지역으로 주변의 환경·교통 및 자연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가 없는 지역이어야 한다.
라. 토지분할	녹지지역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마.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p>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분진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계의 차폐 등 교통의 방해, 미관의 해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양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보호수 또는 문화재 등의 주변으로서 보전과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 아니어야 한다. (5) 공원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주변의 경관과 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니어야 한다.

【별표 2】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1조 제1호 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균린생활시설 중 같은호 가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2. 예산군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군수가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에 한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균린생활시설 중 아목(변전소를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같은호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별표 3】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1조제2호관련)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2. 예산군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타종시설 및 육 외확성장치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같은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과 같은 호 마목(박물관·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같은호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별표 4】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1조제3호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같은호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2. 예산군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
 -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같은호 나목 및 상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와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미만인 것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생활권수련시설 및 자연권수련시설을 제외한다)
 -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중 오피스텔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2미터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아파트형공장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 (6)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것(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12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한한다)
 -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및 세차장(너비 15미터 이상인 도로에 10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같은호 가목 내지 다목을 제외한다)

【별표 5】

제2종일반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1조제4호관련)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같은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
 -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같은호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2. 예산군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전시장,식물원
 -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같은호 나목 및 상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와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미만인 것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같은호 가목의 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에 한한다)
 -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제1호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같은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아파트형공장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 (6)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석유판매소,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세차장, 시내버스차고 및 주차대수 2대 이하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
-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같은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같은호 가목 내지 나목을 제외한다)

【별표 6】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1조제5호 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균린생활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접회시설 중 같은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같은호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2. 예산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균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접회시설(같은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과 관람장을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중 같은호 나목 및 상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와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미만인 것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중 같은호 가목의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에 한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제1호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

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아파트형공장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 (6)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석유판매소,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세차장·시내버스차고 및 주차대수 2대이하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같은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같은호 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다)

【별표 7】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1조제6호관련)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접회사설중 같은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
 -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2. 예산군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접회사설(같은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너비 15미터이상 도로에 10미터이상 접하여야 한다)
 -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 (6) 소음·진동 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고압)가스판매소와 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같은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같은호 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다)
-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중 야외음악당·야외극장 및 어린이회관

【별표 8】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1조제7호관련)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같은호 가목 및 나목의 시설을 제외 한다)
2. 예산군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80퍼센트 미만인 것.
 -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같은호 가목의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에 한한다)
 -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출판·인쇄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 (6)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고압)가스판매소와 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별표 9】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1조제8호관련)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80퍼센트 미만인 것.
 -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같은호 가목 및 나목의 시설을 제외 한다)
2. 예산군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제1호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 (6)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고압)가스판매소와 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같은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

【별표 10】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1조제9호 관련)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80퍼센트 미만인 것.
 -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같은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
 -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2. 예산군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제1호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같은호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 (6)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참고시설
-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고압)가스판매소와 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및 세차장
-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같은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같은호 가목 내지 다목을 제외한다)

【별표 11】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1조제10호관련)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2. 예산군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고압)가스판매소와 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같은호 가목 내지 다목을 제외한다)

【별표 12】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1조제11호 관련)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호 가목·나목·차목 및 타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발전소
2. 예산군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기숙사(당해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의 종업원용에 한한다)
 -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같은호 가목·나목 및 타목에 해당하는 것
 -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판매용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같은호 가목의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에 한한다)
 -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같은호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을 한한다)·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의한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발전소를 제외한다)

【별표 13】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1조제12호 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판매용 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 시설 중 발전소
2. 예산군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접희시설 중 같은호 가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중 같은호 가목의 병원(정신병원 및 요양원을 제외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 시설(발전소를 제외한다)

【별표 14】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1조제13호관련)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기숙사
 -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판매용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발전소
2. 예산군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
 -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로서 제1호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
 -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발전소를 제외한다)

【별표 15】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1조제14호관련)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초등학교
 -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같은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것
2. 예산군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다중주택을 제외하고, 신축은 농어가로서 1가구 1주택인 경우에 한한다)
 -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같은호 가목·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짐회시설중 같은호 가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
 -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같은호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중학교·고등학교
 -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16】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1조제15호관련)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같은호 사목 내지 자목에 해당하는 것과 초등학교
 -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중 운동장
 -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2. 예산군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을 제외한다)
 -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같은호 다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
 -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판매시설에 한한다)
 -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및 직업훈련소
 -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도정공장·식품공장 및 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1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같은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같은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17】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1조제16호 관련)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다)
 -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직업훈련소 및 학원을 제외한다)
 -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
2. 예산군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 음식점
 -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과 같은호 라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것
 - (1)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 (2)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직

광장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같은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 (3)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
원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
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아파트형공장·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
서 같은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
는 것
-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
한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별표 18】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1조제17호관련)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초등학교
 -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같은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것
2. 예산군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같은호 가목·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종교집회장(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같은호 사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것과 중학교·고등학교
 -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같은호 가목 및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같은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19】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1조제18호관련)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같은호 가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초등학교
 -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같은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같은호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것
2. 예산군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같은호 가목·나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같은호 사목 내지 자목에 해당하는 것과 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같은시행령 별표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같은호 나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같은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같은호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것
-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같은호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20】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1조제19호관련)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을 제외한다)
 -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암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을 제외한다)
 -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같은호 가목 및 나목과 바목 내지 자목에 해당하는 것
 -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중 운동장
 -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2. 예산군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의 범위안에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휴게음식점
 -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같은호 나목·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같은호 라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것
 -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

원

-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같은호 나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것
-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부지면적(2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군수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안에 입지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 별표 19 제2호마목(1) 내지 (4)에 해당하는 것
 - (2)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학제품제조시설을 제외한다.
 - (3)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중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 (5) 섬유제조시설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

【별표 21】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1조제20호 관련)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같은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
 -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초등학교
 -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같은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발전소
2. 예산군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같은호 나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같은호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것
 -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같은호 나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발전소를 제외한다)
 -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22】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1조제21호 관련)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초등학교
2. 예산군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나목 내지 바목의 건축물은 국도,지방도,국가하천,지방하천,도시공원,자연공원으로부터 300미터이상 떨어져 있어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는 지역에 건축하는 것으로 정화시설등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갖춘것에 한한다)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같은호 가목·바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같은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같은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발전소
 -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중 같은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

【별표 23】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1조제22호 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균린생활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균린생활시설(같은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 · 임업 · 축산업 · 수산업용에 한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2. 예산군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균린생활시설 중 같은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중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
 -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공판장
 -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직판장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 · 제3호 또는 같은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 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 병원 ·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재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9 제2호마목(1) 내지
(4)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같은호 가목에 한한다)

【별표 24】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1조제23호 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균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을 제외한다)
 -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다)
 -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같은호 가목 및 나목과 바목 내지 자목에 해당하는 것
 -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2. 예산군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의 범위안에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균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균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한다)
 -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판매용시설인 경우에는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같은호 다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것
 -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 차. 별표 19 제2호마목 및 별표 20 제2호차목의 공장
-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25】

제1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2조제1호관련)

제1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중 옥외체육이 있는 골프연습장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26】

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2조제2호관련)

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장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27】

제1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2조제3호관련)

제1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접회시설중 접회장, 관람장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챌린지 있는 골프연습장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에 한한다)
1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28】

제2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2조제4호관련)

제2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접회시설중 접회장, 관람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29】

전통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2조제5호관련)

전통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체육이 있는 골프연습장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30】

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2조제6호관련)

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와 건축물의 용도 등에 대한 건축제한은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

【별표 31】

미관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7조제1항관련)

미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장례예식장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에 한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교도소, 감화원.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32】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2조제1호관련)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요양소 및 장례예식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탁시설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에 한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교도소, 감화원.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33】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2조제2호관련)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동·식물원, 집회장의 회의장, 공회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참고시설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에 한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교도소, 감화원.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34】

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2조제3호관련)

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동·식물원, 집회장의 회의장, 공회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시장, 쇼핑센타, 대형점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에 한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교도소, 감화원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35】

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2조제4호관련)

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항공법에 의하여 제한되는 건축물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별표 36】

개발진흥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관련)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개발진흥지구안에서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별표 37】

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5조관련)

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의 슈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별표 38】

농·수산업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6조관련)

농·수산업지구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의 슈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농·림·축·수산업용에 한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도정공장, 식품공장, 제재업의 공장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림·축·수산업용에 한한다)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